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행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 제2항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,

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신·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의회 동의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공유재산에 신·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,

영구시설물 축조시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하거나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